【 7 】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1. 22.

제 출 자 : 양주군수

□ 개정이유

○ 상위법령중 각종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법령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별표1"중 농수산부 관계와 관련하여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규정과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 보건사회관계중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용역업, 숙박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문화공보 관계중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규정과 수수료 요율 등을 삭제(안 "별표1")

나. 체육진흥법 개정시 국민체육진흥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삭제(안 제3조의2)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5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
2) 인감의 개인신고	1건	400원	
2. 신상에 관한 증명			
· 부양사실확인원	1통	35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750원	
2) 분배농지 상환 완료	1통	800원	
3) 공장등록 증명	1통	750원	
4) 시설보유증명	1통	2,000원	
5) (식품, 환경)영업허가, (휴 · 폐업)사실증명	1통	1,400원	
6) 의료기관(휴 · 폐업)사실증명	1통	1,4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시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1통	800원	
2) 공부의 등 · 초본 교부대장 문서			지적관계 제외
· 토지도면	1통	500원	
· 건물도면	1통	500원	
3)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 기본료	시간당	45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 · 허가 등록 지정의 대장 열람	1건	45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800원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800원	
4)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800원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800원	
6)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2,000원	
7)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800원	
8) 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8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통	500원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1통	5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통	500원	
4) 징수유예 증명	1통	2,0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 공급 실적)증명	1통	1,0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원	
3) 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1,0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1,000원	
8. 자동차에 관한 증명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9.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1,000원	
2)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4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	1통	300원	
2)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800원	
11.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			
1)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1매	100원	
2)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	1시간	200원	
	초과10분당	100원	
12.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등에 관한사항			
1) 필름의 인화	1매	200원	실비(재료비)별도부담
2) 녹음테이프의 복사	1건	300원	〃
3) 녹음테이프의 청취	10분당	200원	〃
4) 녹화테이프의 복사	1건	300원	
5) 녹음테이프의 영상관람	10분당	200원	
6) 컴퓨터 입력자료 인쇄	1매	100원	
7) 컴퓨터 입력자료 관람	1건	200원	
8)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사항에 의한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5,500원 계속1,500원	
2) 토지가격확인원	1건	800원	
3) 토직등급 설정 심사청구 신청	1건	4,000원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회계관계(신설 '99. 11. 23)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건	5,000원	
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1건	7,000원	
10억원 초과	1건	10,000원	
3. 농수산부 관계			
1)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300원	
4. 상공 및 등력자원 관계			
·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1건	2,300원	
5. 건설관계			
1) 사도계설 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1건	4,500원	
2)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1건	300원	
3) 하천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원	
4)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	1건	점용료의	
변경허가		1.5/1,000원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1건	4,500원	
6)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4,600원	
7)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	척당	3,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 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3,8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 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4,0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4,2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1건	3,000원	
9)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1건	2,500원	
10) 공(시)영주택(증, 개축) 승인신청	1건	2,500원	
11)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4,500원	
1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2,000원	
13)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2,000원	
1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1,700원	
6. 보건사회 관계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1,800원	
2) 치과 기공소 인정	1건	10,000원	
3)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4)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30,000원	
5)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20,000원	
6)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20,000원	
7)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구조이전)	1건	10,000원	
8)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부속의료기관포함)	1건	10,000원	
9)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건	허가,신고 수수료와 같음.	공중위생법제8조3항
10) 유기장 영업허가(기타유기장업)	1건	20,000원	
11) 유기장 영업허가(컴퓨터게임장업)	1건	20,000원	
12) 유기장 영업허가(종합유원시설업)	1건	40,000원	
13) 위생처리업신고	1건	2,300원	
14) 유기장업 신고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5)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허가(컴퓨터게임장업)	1건	10,000원	
16)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허가(기타유기장업)	1건	10,000원	
17)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허가(종합유원시설업)	1건	20,000원	
18)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신고(컴퓨터게임장업)	1건	10,000원	
19)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신고(기타유기장업)	1건	10,000원	
20)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신고(종합유원시설업)	1건	20,000원	
21) 위생처리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200원	
22) 유기장업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0,000원	
23) 세척제제조업신고	1건	10,000원	
24)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2,300원	
25)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200원	
26) 세척제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5,200원	
27) 장난감제조업신고	1건	2,300원	
28) 장난감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200원	
29) 이(미)용사 면허신청	1건	2,300원	
30)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	1건	2,000원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설치허가			
· 공연장	1건	11,000원	
2) 공연장 증축등 허가사항 변경신청			
· 공연장	1건	6,000원	
3)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2,000원	
4)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	1건	5,000원	
5)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사항 변경등록	1건	5,000원	
6)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 신청	1건	4,500원	
7)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변경 등록 신청	1건	4,500원	

(개정전)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500원	일제신고등은 제외
2) 인감의 개인신고	1건	400원	
2. 신상에 관한 증명			
· 부양사실확인원	1통	35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750원	
2) 분배농지 상환 완료	1통	800원	
3) 공장등록 증명	1통	750원	
4) 시설보유증명	1통	2,000원	
5) (식품, 환경)영업허가, (휴 · 폐업)사실증명	1통	1,400원	
6) 의료기관(휴 · 폐업)사실증명	1통	1,4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시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1통	800원	
2) 공부의 등 · 초본 교부대장 문서			지적관계제외
· 토지도면	1통	500원	
· 건물도면	1통	500원	
3)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 기본료	시간당	45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 · 허가 등록 지정의 대장 열람	1건	45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800원	
3) 환지(예정지정) 증명	1필지	800원	
4)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800원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800원	
6)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2,000원	
7)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800원	
8) 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8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통	500원	
2) 납세완납증명 EH는 미과세 증명	1통	5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통	500원	
4) 징수유예 증명	1통	2,0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 거래액(물품 공급 실적)증명	1통	1,0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원	
3) 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1,0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1,000	
8. 자동차에 관한 증명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9.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1,000원	
2)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4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	1통	300원	
2)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800원	
11.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열람사항	1매	100원	
1)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1매	100원	
2)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	1시간	200원	
	초과10분당	100원	
12.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등에 관한 사항			
1) 필름의 인화	1매	200원	
2) 녹음테이프의 복사	1건	300원	
3) 녹음테이프의 청취	10분당	200원	
4) 녹화테이프의 복사	1건	300원	
5) 녹음테이프의 영상관람	10분당	200원	
6) 컴퓨터 입력자료 인쇄	1매	100원	
7) 컴퓨터 입력자료 관람	1건	200원	
8)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사항에 의한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고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5,500원 계속1,500원	
2) 토지가격확인원	1건	800원	
3) 토직등급 설정 심사청구 신청	1건	4,000원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회계관계(신설 '99. 11. 23)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건	5,000원	
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1건	7,000원	
10억원 초과	1건	10,000원	
3. 농수산부 관계			
1) 축사 표준 설계도서 발급 신청	1건	3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곡사항 변경신청	1건	2,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건	300원	
·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1건	2,000원	
5. 건설관계			
1) 사도계설 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1건	4,500원	
2)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	1건	점용료의	
허가		1/1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1건	300원	
3) 하천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원	
4)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	1건	점용료의	
변경허가		1.5/1,000원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	1건	4,500원	
허가			
6)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4,600원	
7)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척당	3,500원	
이하의 배			
나. 가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	척당	3,800원	
이상 10인이하의 배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 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4,0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4,200원	
8)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1건	3,000원	
9)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1건	2,500원	
10) 공(시)영주택(증, 개축) 승인신청	1건	2,000원	
11)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4,500원	
1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2,000원	
13)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2,000원	
1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1,700원	
6. 보건사회 관계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1,800원	
2) 치과 기공소 인정	1건	10,000원	
3)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4)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원	
5)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원	
6)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10,000원	
7)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구조이전)	1건	10,000원	
8)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부속의료기관포함)	1건	10,000원	
9)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건	허가.신고 수수료와 같음.	공중위생법제8조3항
10) 숙박업 신고(여관업)	1건	25,000원	
11) 숙박업 신고(호텔, 론도미니엄업)	1건	7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2) 유기장 영업허가(기타유기장업)	1건	20,000원	
13) 유기장 영업허가(컴퓨터게임장업)	1건	20,000원	
14) 유기장 영업허가(종합유원시설업)	1건	40,000원	
15) 이(미) 영업허가(종합유원시설업)	1건	2,300원	
16) 숙박업 신고(여인숙업)	1건	3,500원	
17) 세탁업신고	1건	2,300원	
18) 위생처리업신고	1건	2,300원	
19) 목용장업 신고(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건	6,000원	
20) 목욕장업신고(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	1건	40,000원	
21)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1건	2,300원	
22) 유기장업 신고	1건	20,000원	
23)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허가(컴퓨터게임장업)	1건	10,000원	
24)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허가(기타유기장업)	1건	10,000원	
25)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허가(종합유원시설업)	1건	20,000원	
26)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허가(컴퓨터게임장업)	1건	10,000원	
27)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신고(기타유기장업)	1건	10,000원	
28)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신고(종합유원시설업)	1건	20,000원	
29) 위생처리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200원	
30) 숙박업신고사항변경신고(호텔, 콘도미니엄업)	1건	35,000원	
31) 숙박업신고사항변경신고(여관업)	1건	13,000원	
32) 숙박업신고사항변경신고(여인숙)	1건	2,000원	
33) 위생관리용역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200원	
34) 세탁업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200원	
35) 이(미)용업 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200원	
36) 목욕장업신고사항변경신고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건	3,000원	
37) 목욕장업신고사항변경신고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	1건	20,000원	
38) 유기장업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0,000원	
39) 세척제제조업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0)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2,300원	
41)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200원	
42) 세척제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5,200원	
43) 장난감제조업신고	1건	2,300원	
44) 장난감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200원	
45) 이(미)용사 면허신청	1건	2,300원	
46)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	1건	2,000원	
7.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2,200원	
2)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3) 공연장 설치허가			
· 공연장	1건	11,000원	
4) 공연장 증축등 허가사항 변경신청			
· 공연장	1건	6,000원	
5)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6) 출판사 및 인쇄소 등곡 신청	1건	5,000원	
7)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사항 변경등록	1건	5,000원	
8)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 신청	1건	4,500원	
9)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변경 등록 신청	1건	4,500원	
10)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 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경기도 광고물 등 관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대행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삭 제>
[별표1]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확인등】			
3.농수산부 관계			
1) (생략)			
2)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2,000원	
4.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 (생 략)			
5.건설관계			
1)~ 14) (생 략)			
6.보건사회 관계			
1) ~ 2) (생 략)			
10)숙박업신고(여관업)			
11)숙박업 신고(호텔,콘도	1건	25,000원	
미니업업)	1건	70,000원	
12) ~14) (생 략)			
15)이(미)용업 신고			
16)숙박업 신고(여인숙)	1건	2,300원	
17)세탁업 신고	1건	3,500원	
	1건	2,300원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확인등】			
3. ----------			
1) (현행과 같음)			
<삭 제>			
4. ---------- · (현행과 같음)			
5. ----------			
1) ~ 14) (현행과 같음)			
6.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2)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9)목욕장업 신고(공동탕, 가족탕,한증막)	1건	6,000원		<삭 제>			
20)목욕장업신고(사우나탕, 증기탕,복합목욕탕)	1건	40,000원		<삭 제>			
21)위생관리용역업 신고	1건	2,300원		<삭 제>			
22) ~29) (생략)				22)~ 29) (현행과 같음)			
30)숙박업신고사항변경신고 (호텔,콘도미니엄업)	1건	35,000원		<삭 제>			
31)숙박업신고사항변경신고 (여관업)	1건	13,000원		<삭 제>			
32)숙박업신고사항변경신고 (여인숙)	1건	2,000원		<삭 제>			
33)위생관리용역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200원		<삭 제>			
34)세탁업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200원		<삭 제>			
35)이(미)용업 신고사항변경 신고	1건	1,200원		<삭 제>			
36)목욕장업신고사항변경신 고(공동탕,가족탕,한증막)	1건	3,000원		<삭 제>			
37)목욕장업신고사항변경신 고(사우나탕, 증기탕, 복합 목욕탕)	1건	20,000원		<삭 제>			
38)~46) (생략)				38)~ 46) (현행과 같음)			
7. 문화공보관계				7. ----------			
1)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2,200원		<삭 제>			
2)공연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1,500원		<삭 제>			
3) ~ 10) (생략)				3) ~ 10)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2]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가. 징수기준

○ 신규 절차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연장)하가시는 신규 설치시의 1/2요율을 적용한다.

○ 형광류 및 네온을 이용한 벽면 광고물인 경우에는 그중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요 율 표

광고물의 종류			기 준	요 율	허가기간
벽면광고물	가로간판		3.5㎡	10,000	신고(3년이내)
			4층이상 설치	1,000	
	세로간판		-		
	돌출간판		3.5㎡미만		허가 배제
			3.5㎡이상		허가(2년이내)
공연광고물			허가공연시 1개당	3,000	허가 (공연종료시까지)
공고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물 전주 및 가로등 주 이용 광고물(공중전화 우표 및 담배표지판 등 이용 광고물 포함)			1개당	500	허가(2년이내)
			50개초과 50개초과100개당	5,500 11,000	허가(2년) 〃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내부좌석 상단		1개당, 10기준	5,000	허가(2년이내)
	차량 양측면		1개당	1,000	신고(2년)
지하철(역) 광고물			1개당	8,000	허가(2년)
지하차도 광고물			1개당 5㎡ 1매당 5㎡미만	4,500 5,000	허가(2년이내) 〃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시내버스부	1매당	1,000	허가 (2년이내)	〃
	영업용택시광고	10매당	1,500	〃	〃
	환경정화용광고	1개소당	30,000	〃	〃
	광고탑	〃	25,000	〃	〃
	전광판(네온)광고	〃	150,000	〃	〃

개 정 안

<삭 제>

현 행

광고물의 종류		기준	요율	허가기간
기타광고물	입간판(선전탑,아취용)	1개소당	3,000	허가(20일)
	현수막	1개당	2,000	신고(15일이내)
	풀래카드	〃	2,000	〃
	에드바룬광고	〃	10,000	허가(1개월이내)
	서비스광고물	3.5㎡	1,000	신고(2년)
	벽보지류	100매당	4,500	신고15일이내
	전단	공중살포 1회	22,000	신고(5일이내)
		신고1회(5,000매기준)	2,500	신고(15일이내)
	지주이용 간판	1개소당	12,000	
	형광류 및 네온 광고물	1㎡이하	3,500	허가(2년이내)
		1㎡초과 3.5㎡까지	5,000	
		3.5㎡초과 10㎡까지	7,000	
		10㎡초과	20,000	
	이·미용업소 싸인광고	1개소당	2,000	〃
	주유소안내간판(풀싸인)	1개소 70㎡이하	12,000	〃
	옥상광고물(탑)	70㎡초과시	270,000	〃
		1㎡당가산액	3,000	〃
	옥상네온 전광 광고	옥상광고물의 2배요금을 적용한다.		〃
	입간판(철도역) 벽면부착(승강당)	1개당	1,500	허가(2년이내)
	입간판	〃	2,000	
	철도연변	〃	10,000	
	고속도 시계탑광고	1개소당(4면)	30,000	
	휴게소광고물 휴게소안내탑	1개소당	400,000	허가(2년이내)
	관광안내기타	〃	20,000	
	비행선 광고물	1식당	400,000	허가(20일이내)

ㅇ 허가기간이 연장될 경우 돌출 옥상광고물등은 안전 미관을 위해 1년마다 설치자(또는 관리책임자)가 안전 점검확인서를 군에 제출

ㅇ 형광류 및 네온 광고물 수수료중 1㎡이상은 1개월 부가요금 5,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동제도 폐지시까지 수수료징수는 유예, 형광류·네온광고물 수수료는 주종 광고물 수수료의 별도부과

ㅇ 야립 광고물의 허가수수료는 유사광고물에 준하여 적용

(별표3)

이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1.5㎠

15㎝

개 정 안

<삭 제>

②文化觀光部長官은 國民體育振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體育用具등을 生産하는 業體중 優秀業體를 指定하여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園으로 하여금 國民體育振興基金에서 그 資金을 融資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3·31, 90·12·27, 93·3·6, 98·12·31〉

③文化觀光部長官은 體育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園으로 하여금 그 資金을 融資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3·31, 90·12·27, 93·3·6, 98·12·31〉

④政府는 高度의 精密性등으로 輸入이 不可避한 體育用具등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減免措置를 할 수 있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業體의 指定, 指定의 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地方自治團體와 學校등에 대한 補助) ①國家는 每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와 學校등에 대하여 體育振興에 필요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韓體育會,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園 기타 體育團體와 體育科學의 硏究機關에 대하여 所要經費 또는 硏究費의 一部를 補助한다. 〈改正 89·3·31〉

③削除 〈93·12·31〉

第3章 國民體育振興基金

第18條 (基金의 設置등) ①體育振興에 所要되는 施設費用 기타 經費를 支援하기 위하여 國民體育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園이 獨立된 會計로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改正 89·3·31, 93·12·31〉

③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31〉

第19條 (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89·3·31, 90·12·27, 93·3·6, 93·12·31, 95·12·30, 98·12·31〉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2. 담배匣包裝紙를 이용한 廣告 및 기타 文化觀光部長官이 승인하는 廣告事業의

收入金

3. 運動場·體育館·水泳場·골프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體育施設의 入場料에 대한 附加金

4. 및 5. 削除 〈93·12·31〉

6.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7. 體育福票發行의 收益金

8. 第20條第3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의 出資등에 따른 收益金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②政府는 第1項第1號의 出捐金을 每 會計年度마다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19條의2 (體育福票의 발행) ①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은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體育福票를 발행할 수 있다. 體育福票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8·12·31〉

②體育福票의 當籤金을 받을 權利는 그 支給日로부터 3月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하며, 消滅時效가 完成된 當籤金은 基金에 귀속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體育福票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3·8, 98·12·31〉

〔本條新設 89·3·31〕

第19條의3 (올림픽徽章事業) ①올림픽을 象徵하는 五輪 및 五輪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標識·圖案·標語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韓올림픽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大韓올림픽委員會는 第1項의 승인에 관한 權限을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使用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9·3·31〕

第20條 (基金의 사용등)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改正 89·3·31, 93·12·31〉

●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制定 1990 · 8 · 1 法律第4242號
改正 1992 · 12 · 8 法律第4516號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 · 1 · 18 法律第5632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屋外廣告物의 表示場所 · 표시방법과 揭示施設의 設置 ·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 방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屋外廣告物"이라 함은 常時 또는 一定期間 계속하여 公衆에게 표시되어 公衆이 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에서 볼 수 있는 것(大統領令이 정하는 交通施設 또는 交通手段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看板 · 立看板 · 懸垂幕 · 壁報 · 傳單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揭示施設"이라 함은 廣告塔 · 廣告板과 기타 工作物로서 屋外廣告物(이하 "廣告物"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3. "屋外廣告業"이라 함은 廣告物을 표시하거나 揭示施設을 設置하는 營業을 말한다.

第3條 (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 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 ·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 · 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거나 市 ·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 · 12 · 13 法5454〉

1.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 및 文化財保護區域
3. 山林法에 의한 保全林地
4.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5. 道路 · 鐵道 · 空港 · 港灣 · 軌道 · 索道 · 河川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부근의 地域
6. 기타 美觀風致의 유지 및 都市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

第14條 (營業停止등) 市·道知事는 屋外廣告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이내의 營業停止 또는 閉鎖를 命할 수 있다.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이 法에 위반되는 廣告物등을 設置하여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15條 (청문)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許可取消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 閉鎖命令

〔全文改正 97·12·13 法5453〕

第16條 (權限의 委任) 市·道知事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7條 (手數料) 다음의 경우에는 그 許可 申請時·申告時 또는 安全度檢查時에 각각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查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第18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2. 第4條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屋外廣告業을 한 者

②第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0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1991 · 2 · 7 조례 제2104호]

제정 1992·10·17 조례 제2297호
개정 1993· 9·10 조례 제2410호
개정 1997·12·31 조례 제2776호
개정 1998· 6·29 조례 제282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도지사는 영제7조 및 영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2·31]

제3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①도지사는 영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표시방법의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지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4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영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우측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제작자명·관리자의 전화번호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12·31]

⑥교육을 위탁받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게시시설관리의 위탁) ①도지사는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영업정지등의 기준) ①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도지사는 영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결과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 옥외광고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업소명·처분내용 및 일자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법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수수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는 각각 별표2·별표3·별표4와 같다.

제18조 (의견청취등) ①도지사는 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6·29〉

②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6·29〉

③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개정 92·10·17〉

제19조 (권한의 위임등) ①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17조 관련)

가. 일반 옥의광고물

(단위 : 원)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지역별수수료	
			시	군
1. 가로형간판				
가. 건물건면 간판	개	· 5제곱미터이하	2,000	1,000
		· 5제곱미터초과시 1제곱시터당 가산	1,000	1,000
나. 건물측·후면 4층 이상(영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이하	30,000	24,000
		· 2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5제곱미터이하	2,000	1,000
		· 5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이하	15,000	10,000
		· 3.5제곱미터초과	20,000	12,000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4.000	3.000
4. 공연간판	개		4.000	3.000
5. 옥상간판	개	· 20제곱미터이하	84,000	76,000
		· 2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당 가산	4.500	4.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이하	15,000	12,000
		·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15,000	10,000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개	· 20제곱미터이하	84,000	76,000
		· 2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500	4,000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10제곱미터이하	15,000	12,000
		·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000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이하	500	500
		· 1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	5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 50개이하	7,500	5,500
		· 50개초과시 50개당 가산	7,500	5,500

(단위 : 원)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지역별수수료	
			시	군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이하 · 5제곱미터초과	9,000 10,000	4,500 5,000
10. 교통수단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차량양측면 다. 영업용택시표시 등	대 대 대	· 10대당	400,000 1,500 2,000	400,000 1,000 1,500
11. 선전탑	개		4,000	3,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3,000
13. 현수막 가.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건물에 설치 신고한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것	개	· 5제곱미터이하 · 5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2,000 1,000
나. 기타 지주 또는 게시설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			3,000	3,000
14. (삭 제)		<삭제 93·9·10>		
15. 벽 보	매	100매당	5,000	4,500
16. 전 단	매	1,000매당	2,500	2,500

(단위 : 원)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지역별수수료	
			시	군
17. 창문이용 광고물		(삭제)		
18.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국민체육진흥광고물 : (삭제)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제9조제1항 관련)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지역별수수료	
			시	군
17. 창문이용 광고물		(삭제)		
18.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며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국민체육진흥광고물 : (삭제)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제9조제1항 관련)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제17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측·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30,000 1,000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15,000 1,000
3. 건물의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1의 가로형간판은 제외) 및세로형간판	· 면적 5제곱미터미만 · 면적 5제곱미터이상 15제곱미터미만 · 면적 1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15,000 500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15,000 500
5. 영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30,000 1,000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15,000 500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제1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관련법규	비 고
신 규	업 소 당	10,000	법제17조제3항	
변 경	〃	5,000	〃	

※수수료의 징수방법

가.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제41조제3항)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할 때

(2) 업소명을 변경할 때

인한 사업

제60조 (기금의 관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축산발전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1조 (기금운용실적의 보고등) ①기금관리자는 연간 기금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②기금관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을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③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④농림부장관은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집행상황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96·12·28>

제9장 보 칙

제62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2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정액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95·7·28>

제63조 (수수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종축원종축배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의 기준은 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중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를 "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시행규칙

축산업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명령을 영 제16조 규정에 의한 초과사육부과금의 부과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법 제31조 제2항	등록또는 허가취소			
가축시장	1. 법 제36조제4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42조 제1호	경 고	개장정지 60일	개장정지 120일	최근 3년 이내에서 회수별 적용
	2.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	법 제42조 제2호	개장정지 30일	개장정지 60일	개장정지 90일	최근 3년 이내에서 회수별 적용
	3.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의 위치 또는 시설을 변경한 때	법 제42조 제2호	개장정지 60일	개장정지 90일	개장정지 180일	최근 3년 이내에서 회수별 적용
	4.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가축매매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때	법 제42조 제3호	개장정지 90일	개장정지 180일	허가취소	최근 3년 이내에서 회수별 적용

〔별표 9〕 〈개정 95·7·28〉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제63조관련)

납 부 대 상 자	금 액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2,000원
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소등록의 신청자	2,000원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등록의 신청자	2,000원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등록의 신청자 및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또는 허가의 신청자	3,000원

〔별지 제10호서식〕〈개정 96·12·28〉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명 :

취급품목 :

사 진 (3cm × 4cm)

축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부장관 인

27274-22111일
93. 11. 17 승인

210㎜ × 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1호서식〕〈개정 95·7·28〉

(앞 쪽)

가축인공수정소등록	□ 신청서 □ 휴업·폐업·영업재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 □는 해당란에 V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수정소	④명 칭			
	⑤소 재 지	(전화번호)		
⑥수 정 인 원				
⑦정액확보방법				
⑧휴업·폐업·영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수입증지)
1.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정액(난자, 수정란)의 검사, 보관, 주입에 필요한 기구등 비품 명세서(신규등록시에 한함) 1부	2,000원
3. 가축인공수정소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시에 한함)	

27274-05911민
95. 6. 14 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

第2節. 公衆衛生

● 공중위생관리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정 1999·2·8 법률제583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 및 통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말일 현재 그 관할구역안의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목욕장의 욕수를 원수(욕조등에 주입되기 전의 물을 말한다) 및 욕조수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 기타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입욕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내공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2.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고 및 출입·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풍속관련 법령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

(추 108)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중위생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 (위생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자는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후 3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벌칙)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욕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公衆衛生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公衆衛生法을 적용한다.

제4조 (이용사·미용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면허로 본다.

제5조 (영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에 의하여 설립된 영업자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로 본다.

제6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公衆衛生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公衆衛生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公衆衛生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公衆衛生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公衆衛生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공연법

소관부처 : 문화관광부

전문개정 1999 · 2 · 8 법률제592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직접 관람케 하는 행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라 함은 屋外廣告物등管理法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공연에 제공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5. "공연장업자"라 함은 연 90일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이상 공연장을 설치 ·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연소자"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미술 · 무대음향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 교육시설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 ·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 연

제4조 (공연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재개·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연소자유해공연물등) ①누구나 青少年保護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青少年保護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公演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公演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公演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公演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公演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公演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公演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령중 각종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법령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가. [별표1] 중 농수산부 관계와 관련하여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변경신청에 대한 규정과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 보건사회 관계중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용역업, 숙박업신고사항 변경신고등에 관한 규정과 문화공보관계중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규정과 수수료 요율등을 삭제
(안 [별표1])

나. 체육진흥법의 개정시 국민체육진흥광고물 표시허가·신고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안 제3조의 2)

□ 개 정 조 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경기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9

○ 공중위생관리법

○ 공연법 부칙 제1조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 예고결과 : 예고예외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